Ⅲ. 국가별 조세조약 분석

이용자를 위하여

상
1. 그리스
2. 남아프리카공화국
3. 네덜란드
4. 네팔
5. 노르웨이
6. 뉴질랜드
7. 덴마크
8. 독일
9. 라오스
10. 러시아
11. 루마니아
12. 룩셈부르크
13. 리투아니아
14. 말레이시아
15. 멕시코
16. 모로코
17. 몰타
18. 몽골
19. 미국
20. 미얀마
21. 방글라데시
22. 베네수엘라
23. 베트남
24. 벨라루스
25. 벨지움
26. 불가리아
27. 브라질
28. 사우디아라비아왕국
29. 스리랑카
30. 스웨덴
31. 스위스
32. 스페인
33. 슬로바크
34. 슬로베니아
35. 싱가폴

하
36. 아랍에미리트연합
37. 아이슬란드
38. 아일랜드
39. 아제르바이잔
40. 알바니아
41. 알제리
42. 영국
43. 오만
44. 오스트리아
45. 요르단
46. 우즈베키스탄
47. 우크라이나
48. 이스라엘
49. 이집트
50. 이태리
51. 인도
52. 인도네시아
53. 일본
54. 중국
55. 체코
56. 칠레
57. 카자흐스탄
58. 캐나다
59. 쿠웨이트
60. 크로아티아
61. 태국
62. 터어키
63. 튀니시아
64. 파키스탄
65. 파푸아뉴기니아
66. 포르투갈
67. 폴랜드
68. 프랑스
69. 필리핀
70. 핀랜드
71. 헝가리
72. 호주
73. 휘지

이용자를 위하여

(1) 해설 대상

■ 각 국가별 분석은 문화예술단체에 적용될 인적용역소득, 사용료 소득 부분을 중심으로 수록 · 해설하였다.

■ 외국공연단체를 우리나라에 초청하였을 경우에 대해 해석하였으므로, 만약 우리나라 단체가 외국에 공연을 한다면 '국가명칭'을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예를 들어, '그리스' → '한국', '한국' → '그리스')

■ 인적용역 소득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공연료 (2) 독립적 인적용역 (3) 종속적 인적용역

- 예술가가 공연예술 활동에 대하여 받은 소득(공연료)은 '연예인 및 체육인' 조항에 적용된다.
- 예술가의 활동을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는 경우는 공연(performance)을 통해서가 아니라, 강의 및 저술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일 경우에 적용된다.
- 예술가의 활동을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보는 경우는 단체(기관)와 예술가간 고용계약을 통하여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사용료 소득은 '저작권', '상표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4) 사용료 제한세율 (저작권, 상표권)

- 저작권과 상표권에 대한 제한세율이 동일한 국가와 다른 국가가 있다.

(2) 판단기준에 따른 국가별 유형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연료에 대한 원천세의 면세/과세 판단기준은 3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연예인 및 체육인' 조항만 적용되는 국가

(2) '연예인 및 체육인' 조항 적용 후 다시 '독립적 인적용역', '종속적 인적용역'이 적용되는 국가

(3) '연예인 및 체육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 따라서, 공연료의 지급과 관련하여서 (1)의 유형에 해당한다면 '연예인 및 체육인' 조항만을 살펴보면 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독립적 인적용역' 부분도 수록하였다.

(3) 조약 전문

■ 조약 전문은 국제교류 업무 시 살펴보기 편하도록 국문과 영문 모두 기재하였다. (단, 사용료는 국문만 기재됨.)

■ 국문과 영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영문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였으며, 관련 사항은 국가별 추가적으로 기재하였다.

(4) 관련용어 해설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과 고정시설(fixed base)

-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권을 결정하는 데에는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 유무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국내세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조세조약상의 고정시설도 국내세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된다.

■ 과세의 기준연도

- 회계연도(fiscal year) : 수입 및 지출을 정리하고 계산하기 위한 인위적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1년을 기간으로 하며 회계연도 개시일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일을 신청하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국가의 회계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다.
- 과세연도(taxable year) : 세금 부과 대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마다 다르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연도)이다.
- 당해연도(calendar year)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당해연도는 해당 회계연도, 해당 과세연도, 해당 역년으로 통칭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 (1역년은 1월 1일-12월 31일 이다)
- 어느 12개월(in any 12-month period) : 어느 기간으로부터 12개월까지이다.

■ 공공기관의 범위 (국세청 고시 제2006-9호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에 대한 고시)

- 체약상대국의 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체약상대국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체약상대국 정부산하기관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1. 그리스 (THE HELLENIC REPUBLIC)

‖ 조약체결일 : 1995. 3. 20 ‖ 조약발효일 : 1998. 7. 10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그리스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 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그리스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그리스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인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 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도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가 · 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식을 결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 ·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및 라디오 ·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 상업상 · 학술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 · 상업상 ·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의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러한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 조약체결일 : 1995. 7. 7 ‖ 조약발효일 : 1996. 1. 7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 ⇒ ▪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한국에서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 – 지원범위 : 전적으로, 주로
    -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제시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해 지원되거나 또는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특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Entertainer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s envisag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if the visit to that other State is supported wholly or mainly by public fund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takes plac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당해 회계연도 어느 12개월 내에 체제시작일이나 종료일이 포함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법인]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개인은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킨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가 · 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or had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or had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For the purposes of this provision, where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tay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he shall be deemed to have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at other State and the income that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that are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shall be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 영문과 국문이 다르므로, 영문을 기준으로 함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0%(주민세 별도 / 11%)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 예술 · 학술 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3. 네덜란드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 조약체결일 : 1978. 10. 25 ‖ 조약발효일 : 1981. 4. 17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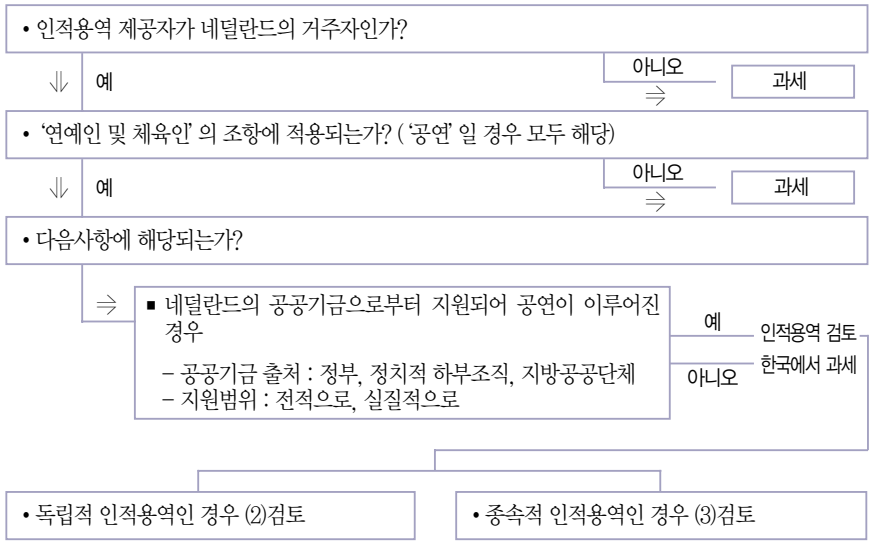

관련 조항 전문

제 18 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5조, 제7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 등의 연예인과 운동가가 그들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또는 기업의 그러한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나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일방국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8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5, 7, 15 and 16 income derived by public entertainers, such as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s, and musicians, and by athletes, from their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r income derived from the furnishing by an enterprise of the services of such public entertainers or athletes may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these activities of services are exercised.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visit of public entertainers or athletes to one of the States is supported wholly or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네덜란드의 거주자인가?
  - ⇓ 예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네덜란드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네덜란드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에 총 183일을 이상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 직업적인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된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그가 그의 활동 수행상 그 타방국내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나) 그가 과세년도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 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2. "자유 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은 물론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5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b) if his stay in the other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taxable year.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네덜란드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네덜란드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네덜란드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네덜란드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6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급료, 임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과세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Article 16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19, 20, 21 and 22,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one of the States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c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taxable years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ur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저작권의 경우 15%, 상표권의 경우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 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

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국내에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국가 자신,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일방국내에 사용료의 지급 근거가 되는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근거가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중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4. 네팔 (KINGDOM OF NEPAL)

‖ 조약체결일 : 2001. 10. 5 ‖ 조약발효일 : 2003. 5. 29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네팔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면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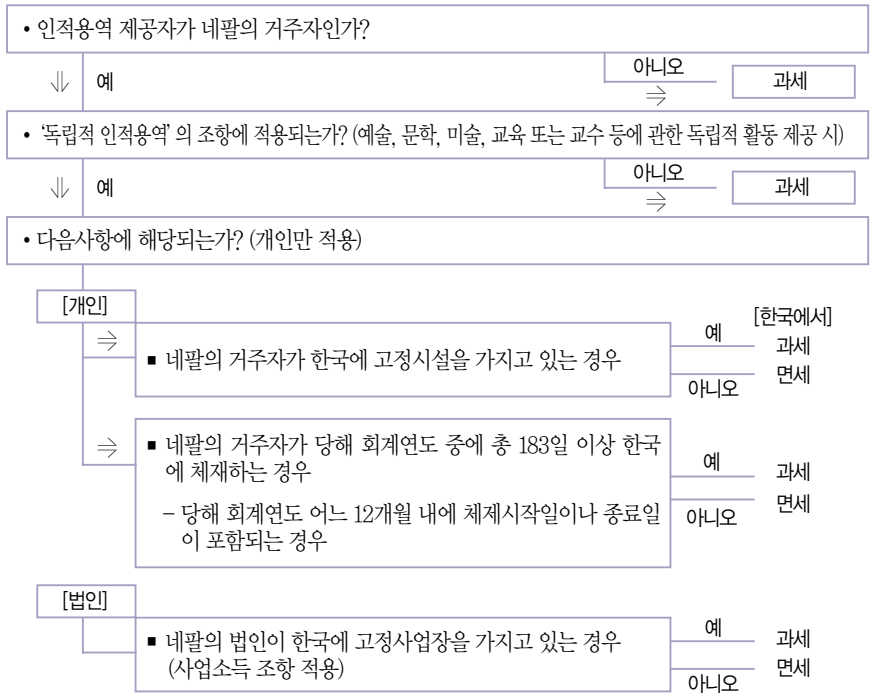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 인이 그의 활동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안에 그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나. 동 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이 타방체약국안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위에서 규정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체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 또는 앞에서 언급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진니어 · 건축가 · 치과의사 ·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a)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or
   b) he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f he has such a fixed base or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foresaid period or periods,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is deriv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during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제한세율 : 15%(주민세 포함)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수익적으로 소유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관련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 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리고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5. 노르웨이 (THE KINGDOM OF NORWAY)

‖ 조약체결일 : 1982. 10. 5 ‖ 조약발효일 : 1984. 3. 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노르웨이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노르웨이이나 한국 중 어느 곳에서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지방법정기구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 ▪ 노르웨이이나 한국 중 어느 곳에서 비영리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인 경우 (2)검토
- 종속적 인적용역인 경우 (3)검토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이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나 이윤,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의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공공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용역이 어느 체약국의 비영리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or if such services of public entertainer or athlete are provided by a non-profit organization of ei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노르웨이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노르웨이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인 성격의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활동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가 이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과 함께 특히 독립적인 학술상, 문학상, 예술상, 교육상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노르웨이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노르웨이의 거주자가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노르웨이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노르웨이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 · 임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본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c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e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저작권의 경우 15%, 상표권의 경우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 도면 ·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 산업상 ·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6. 뉴질랜드 (NEW ZEALAND)

‖ 조약체결일 : 1981. 10. 6 ‖ 조약발효일 : 1983. 4. 22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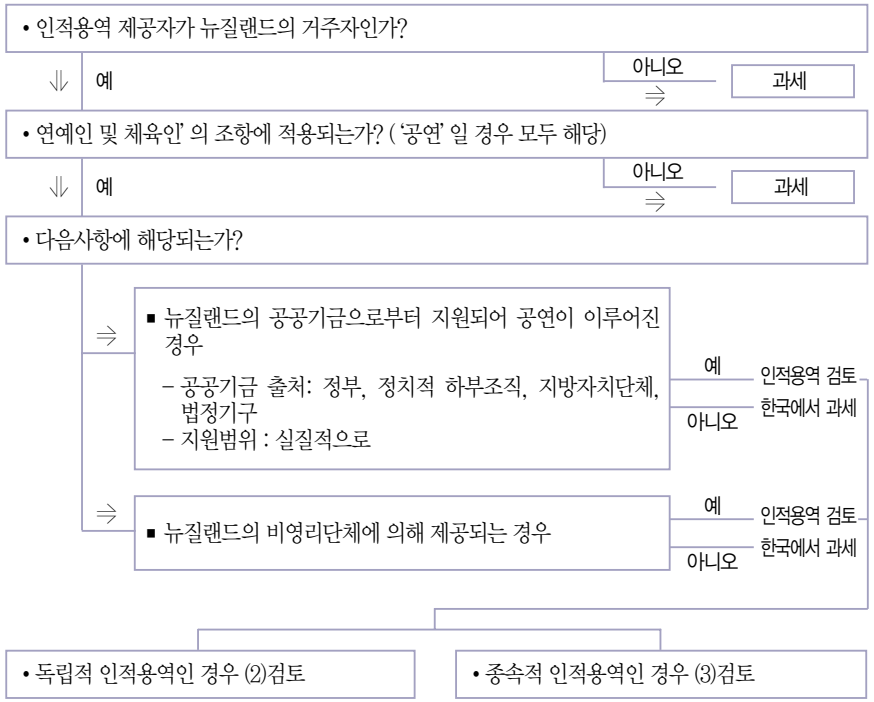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연예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운동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서 행한 인적활동에 관련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나 비영리단체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동 단체의 소유자 ·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않는 한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동 단체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 entertainer or an athlete if the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t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뉴질랜드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뉴질랜드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뉴질랜드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뉴질랜드의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뉴질랜드 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뉴질랜드 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임금과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계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x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텔레비젼과 관련된 사용을 위한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라디오방송과 관련된 사용을 위한 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7. 덴마크 (KINGDOM OF DENMARK)

‖ 조약체결일 : 1977. 10. 11 ‖ 조약발효일 : 1979. 1. 7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덴마크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덴마크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 지원범위 : 전적으로, 실질적으로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인적용역인 경우 (2)검토

관련 조항 전문

제 16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 및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운동가에 의하여 그들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개인활동에 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상기 1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6 ARTIST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such as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s, and musicians, and by athletes, from their personal activities as such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se activities are exercised.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d entertainer or athle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 and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entertainers or athletes to a Contracting State in supported wholly or substantially from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2) 인적용역 사례비(독립적, 종속적 모두 포함)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덴마크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한국에서]
⇒	▪ 덴마크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예	과세
		아니오	면세
⇒	▪ 덴마크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예	과세
		아니오	면세
⇒	▪ 덴마크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예	과세
		아니오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인적 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 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제하며,
   나.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지급되고, 또한
   다.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

Article 14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17, 18, 19 and 20, income o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s in respect of personal services (including professional servic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so rendered, such income or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or remuneration derived by the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er year concerned;
   (b) the income or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income or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person paying the remuneration has in the other State.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5%(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또한
   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림 및 텔레비전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중 초과부문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8. 독일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조약체결일 : 2000. 3. 10 (신협정)　‖ 조약발효일 : 2002. 10. 31 (신협정)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독일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독일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자선단체
    - – 지원범위 : 전적으로, 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들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성명, 사진 또는 그러한 인의 기타 인적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한 어떤 종류의 보수도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득이 배우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우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은 일방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타방국,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동 타방국에서 자선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한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은 그 개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the income derived by the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1 from their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also include remuneration of any kind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the name, the picture or other personal rights of such persons.
3. Where income as defined in paragraphs 1 and 2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4. Paragraphs 1 and 3 shall not apply to income accruing from the exercise of activities by artistes or sportsmen in a Contracting State where the visit to that State is financed entirely or mainly from public funds of the other State, a Land,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n organisation which in that other State is recognised as a charitable organization. In such a case the income may be taxed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독일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이 개인, 법인 다를 경우)
  - [개인]
    - ⇒ ▪ 독일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 ▪ 독일의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 당해 회계연도 어느 12개월 내에 체제시작일이나 종료일이 포함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법인]
    - ▪ 독일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

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where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he shall be deemed to have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at other State and the income that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that are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shall be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dentist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주,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9. 라오스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조약체결일 : 2004. 11. 29 ‖ 조약발효일 : 2006. 2. 9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라오스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라오스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 [개인] ⇒ ▪ 라오스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법인] ▪ 라오스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자기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그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활동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습 · 문학 · 예술 · 교육 및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5%(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

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10. 러시아 (THE RUSSIAN FEDERATION)

‖ **조약체결일 : 1992. 11. 19** ‖ **조약발효일 : 1995. 8. 24**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러시아의 거주자인가?
  - ⇓ 예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 예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텔레비전의 예술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소득은 동 타방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artist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artist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artist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ncome derived by artists or athlete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n agreement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러시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
- ▪ 러시아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 러시아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예 → [한국에서] 과세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법인]
- ▪ 러시아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예 → 과세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독립적 전문적 용역 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당해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거나 되어졌고
   나. 그 소득이 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정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고정시설에 귀속되며
   다. 당해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역년 중 총 183일 이상을 체재하거나 체재하였을 경우 이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7조(사업소득)외 사업이윤금액 및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원칙에 따라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rofessional servic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a) such services are performed or were perform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b) the income is attributable to a fixed base which the individual has or had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c) such individual is present or wa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In such a case, the income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similar to those of Article 7 (Business Profits) for determining the amount of business profits and attributing business profits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5%(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령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체약국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후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이 법에 따라 과세한다.

11. 루마니아 (Romania)

‖ 조약체결일 : 1993. 10. 11 ‖ 조약발효일 : 1994. 10. 6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루마니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8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8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and 16,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5 and 16,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the income derived from the activities performed within the framework of cultural exchanges established under cultural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two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루마니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루마니아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타방체약국내에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사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5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저작료(10%), 상표권(7%), 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3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용료 총액의 7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 ·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기타 전자매체의 형태를 통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위성 또는 유선전송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지방자치단체, 지역 · 행정조직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합의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12. 룩셈부르크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 조약체결일 : 1984. 11. 7 ‖ 조약발효일 : 1986. 12. 26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룩셈부르크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 ⇒ ▪ 룩셈부르크의 비영리단체에게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6 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예능인과 같은 연예인, 음악가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행한 그의 인적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에 의하여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자격으로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행하여지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그들의 인적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인적 활동에 의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며, 동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동인이 타방체약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and 14,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3 and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a Contracting Sta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is person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if this pers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룩셈부르크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 ▪ 룩셈부르크의 거주자가 어느 12개월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3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수행 상 그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나. 동인이 12개월 기간 중 일회 또는 다수회에 걸쳐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3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such income may be a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b) if his stay in the other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within any 12 month period.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5%(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의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13. 리투아니아 (THE REPUBLIC OF LITHUANIA)

‖ 조약체결일 : 2006. 4. 20 ‖ 조약발효일 : 2007. 7. 14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리투아니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격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의 정부 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리투아니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 ▪ 리투아니아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 리투아니아의 개인이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법인]

- ▪ 리투아니아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
   나.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가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제공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But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but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during the period of his presence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 · 상업적 · 과학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사용료는 지급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그 밖의 인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14. 말레이시아 (MALAYSIA)

‖ 조약체결일 : 1982. 4. 20 ‖ 조약발효일 : 1983. 1. 2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말레이시아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지방법정기구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인 경우 (2)검토
- 종속적 인적용역인 경우 (3)검토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와 같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이러한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 자신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에 대한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방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해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나 이윤 · 급료 ·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f his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말레이시아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에 총 183일 이상 한국 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한국에서]
    - 아니오 → 면세
  - ⇒ ▪ 한국 거주자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 당해 역년 US$3,000를 초과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한국 거주자거나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급 하는 경우 당해 역년 US$3,000를 초과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 하에서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
   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더라도, 타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 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적 · 문화적 · 예술적 · 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특히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is stay in the other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or
   b. if the remuneration for his services in the other State is either derived from residents of that State or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 person not resident in that State has in that State and which, in either case exceeds 3,000 United States dollars in the calender year concerned, notwithstanding that his stay in that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less than 183 days during that calendar year.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c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말레이시아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말레이시아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한국에서]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급료 ·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저작권 15%, 상표권 10%(주민세 포함)

단,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거주자인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25% 세율이 적용됨. (2009년 이후 20% 예정)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4항(가)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제4항(나)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주자에 의해 말레이시아로부터 발생되고 승인된 산업상의 사

용료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댓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나.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리비젼 방영용 필름과 문학 · 예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5.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라 함은 말레이시아의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고 또 확인되며, 다음의 분류중의 하나에 속하는 활동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종사하는 기업에 의하여 지불되는 제4항(가)에 정의된 바와 같은 사용료를 의미한다.
   가. 제조업, 조립 또는 가공업
   나. 건설업, 민간기계공업 또는 조선업 또는
   다. 전기업, 수력, 개스 또는 물의 공급업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에 의해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시될 수 있다.

15. 멕시코 (MEXICO)

‖ 조약체결일 : 1994. 10. 6 ‖ 조약발효일 : 1995. 2. 1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멕시코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멕시코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항에 언급된 소득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그의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의 명성과 관련된 인적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

득은 타방체약국 방문이 일방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ncome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include income derived from any personal activities performed by such resid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his reputation as an entertainer or sportsman.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or sportsma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visit to that other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public fund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멕시코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 ■ 멕시코의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의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당해 회계연도 어느 12개월 내에 체제시작일이나 종료일이 포함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한국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법인]

■ 리투아니아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개인일 경우 당해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 중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 하거나, 또는

나.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 과세대상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용역에 귀속시킬수 있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사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a) the resident, being an individual,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or
   b) the resident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at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ts activities, but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servic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 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사용료"라 함은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의 생산성이나 사용 · 처분 여부와 연계되어 지급되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의 양도차익을 포함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되는 권리, 사용 또는 정보가 주로 이 조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적용한다.

16. 모로코 (THE KINGDOM OF MOROCCO)

‖ 조약체결일 : 1999. 1 .27 ‖ 조약발효일 : 2000. 6. 16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모로코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모로코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 지원범위 : 전적으로, 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의 일방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타방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if the visit to that State is supported wholly or mainly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모로코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모로코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의 활동의 수행 목적상 타방체약국안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사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저작권 5%, 상표권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저작권 사용료와 어떠한 문학 · 극 · 음악 또는 미술작품이라도 그 생산 또는 재생산과 관련한 지급과 같은 기타의 사용료(그러나, 영화 필름 및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방송용 필름 또는 비디오 테이프와 관련한 사용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 예술적 ·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지급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17. 몰타 (THE REPUBLIC OF MALTA)

‖ 조약체결일 : 1997. 3. 25 ‖ 조약발효일 : 1998. 3. 2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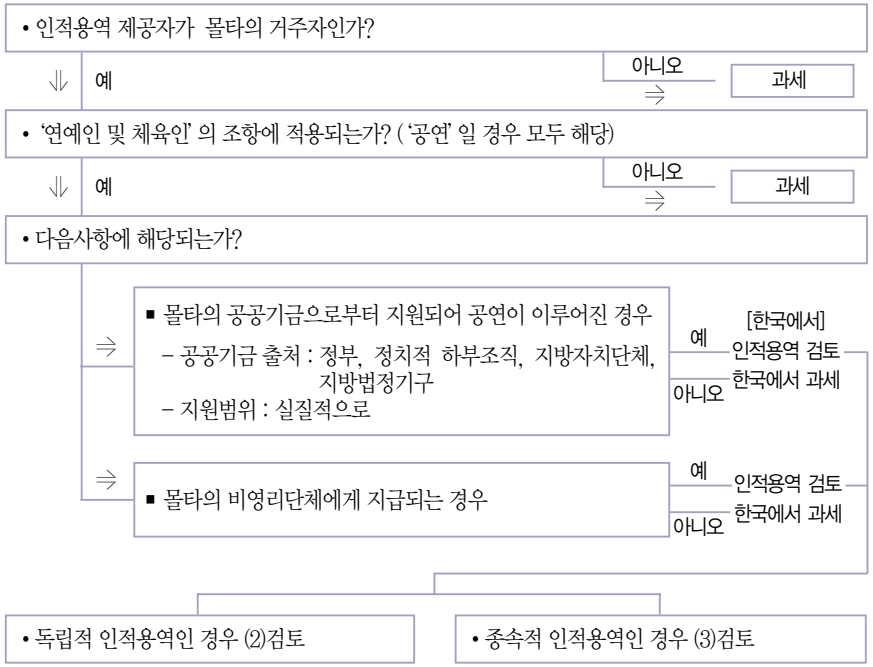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및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정치적 하부조직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그들의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따른 보수 · 이윤 · 급여 · 임금 또는 여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소득이 전혀 그 단체의 소유주 · 구성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고 또한 이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동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몰타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몰타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 ▪ 몰타의 거주자가 어느 역년 중에 총 183일을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여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어느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사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which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during any calendar year.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몰타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몰타의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 ▪ 몰타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몰타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 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0%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18. 몽골 (MONGOLIA)

‖ 조약체결일 : 1992. 4. 17 ‖ 조약발효일 : 1993. 6. 6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몽골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및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and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athlete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몽골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몽골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가 · 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예술작품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하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지방당국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19.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조약체결일 : 1976. 6. 14 ‖ 조약발효일 : 1979. 10. 20

* 미국연예법인 소속 연예인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도 참조(p.144)

(1)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공연료(performance fee) 포함]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미국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해당)

[개인]

- ⇒ ▪ 미국의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 ▪ 미국의 개인이 한국에서의 소득이 US$3,000를 초과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미국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법인]

- ▪ 미국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8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Article 18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from the performance of personal services in an independent capacity, may be taxed by that Contracting State.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such income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from the performance of personal services in an independent capacit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a) The individual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183 days or more in the taxable year;
   (b) Such income exceeds 3,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in a taxable year; or
   (c) The individual maintains a fixed base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183 days or more in the taxable year, but only so much of his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such fixed base.

(2)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미국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한국에서]
⇒ ▪ 미국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예	과세
	아니오	면세
⇒ ▪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개인, 법인)의 피고용인 경우	예	과세
	아니오	면세
⇒ ▪ 미국의 거주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보수를 부담하는 경우	예	과세
	아니오	면세
⇒ ▪ 미국의 거주자의 소득이 US$3,000를 초과하는 경우	예	과세
	아니오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9 조 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9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Wages, salaries, and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from labor or personas services performed as an employee, including remuneration from services performed by an officer of a corporation, may be taxed by that Contracting State. Except as provided by paragraph (2) such remuneration derived from sources with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Remuner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e other States if:
   (a) He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s aggregating less than 183 days in the taxable year;
   (b) He is an employee of a resident of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or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maintain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as such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d) Such income does not exceed 3,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저작권 10%, 상표권 15%
(주민세 별도 / 저작권 11%, 상표권 16.5%)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사 용 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 예술 ·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참고] 미국연예법인 소속 연예인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도

1)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란?
- 미국연예(체육)법인에 소속된 개인 연예인(운동가)의 국내 용역제공 관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를 규정한 제도이다.
- 국내기획사 등 소득지급자가 미국연예(체육)법인에게 국내공연(경기)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일단 원천징수 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미국연예(체육)법인이 소속 개인 연예인(운동가)등에게 각각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에 대한 세액(지급액의 20%, 주민세 2% 별도)을 원천징수하여 우리나라에 신고하고 정산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과다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2) 원천징수절차 특례로 인한 세부담률
- 미국연예(체육)법인은 소속 개인 연예인(운동가)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만을 납부하고 국내기획사가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담한 미국연예(체육)법인에 소속된 개인 연예인(운동가)은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3) 원천징수절차 특례 신설 목적
- 미국연예(체육)법인이 소속 비거주연예인(운동가)등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비거주연예인(운동가) 등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다.

- 한 · 미 조세조약상 미국법인에게 국내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으나 (한 · 미 조세조약 §8)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미국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각각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한 · 미 조세조약 §18, §19)
- 그러나 미국법인이 소속 연예인(운동가)등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을 알 수 없어 신고납부 안내가 곤란하였다.
- 따라서 미국법인이 스스로 우리나라에 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절차특례 제도를 신설하였다.

4) 원천징수절차 특례 적용시점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18)

5) 원천징수절차 특례 적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미국연예(체육)법인 소속의 비거주연예인(운동가)이 우리나라에서 공연(경기)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비거주연예인(운동가)이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미국연예(체육)법인이 국내기획사 등으로부터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③ 미국연예(체육)법인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용역제공 대가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 2008년 4월 30일 현재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는 미국연예(체육)법인이 소속 연예인(운동가)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향후 조세조약 제 · 개정 내용에 따라 적용범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6)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관련 법령 : 소득세법§156의5, 동법시행령 §207의7

① 미국연예(체육)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예:국내기획사)는 지급시 지급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한다.

② 미국연예(체육)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제출할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미국연예(체육)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미국연예(체육)법인 간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원천징수금액 납부처]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체신관서

③ 국내공연(경기)과 관련하여 소속 연예인(운동가)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미국연예(체육)법인은 지급시 지급액의 20% (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한다.
- 미국연예(체육)법인 소속의 개인 연예인(운동가)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그 연예인(운동가)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한다.

④ 미국연예(체육)법인은 원천징수한 금액을 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출할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0서식)

※ 국내기획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미국연예(체육)법인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큰 경우 미국연예(체육)법인은 그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내기획사가 ①, ②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미국연예(체육)법인이 ③, ④에 따라 원천징수신고한 금액보다 큰 경우 미국연예(체육)법인은 그 차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
-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1서식)
-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⑥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미국연예(체육)법인에게 지급한다.

- 환급세액 = 환급할 세액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가산금 = 환급할 세액 × 대상일수 × 이자율
  - 환급할 세액 : 환급신청세액 중 확인 결과 실제 환급할 세액
  - 대상일수 : ①, ②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 이자율 : 국세청장고시 이자율 ('07.10.15 고시(제2007-32호) : 1일 10만분의 13.7)

20. 미얀마 (THE UNION OF MYANMAR)

‖ 조약체결일 : 2002. 2. 22 ‖ 조약발효일 : 2003. 8. 4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미얀마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 및 체육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or in connection with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of this Agreement,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in respect of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thin the framework of cultural or sports exchange programme agreed to by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se activities are exercised.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미얀마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한국에서]
⇒ ▪ 미얀마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	과세
	아니오	면세
⇒ ▪ 미얀마의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예	과세
	아니오	면세
⇒ ▪ 한국의 거주자가 지급하거나, 한국의 고정사업장 혹은 고정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고, 회계연도 중 US$12,000를 초과 하는 경우	예	과세
	아니오	면세

법인

▪ 미얀마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예	과세
	아니오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그 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그 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그 타방체약국의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고, 회계연도중 미화 12,000불을 초과하는 금액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사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re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or
   (c) If the remuneration for his activiti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paid by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is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Contracting State and exceeds in the fiscal year US $12,000.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5%(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특허권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일방체약국의 법정 단체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된다.

21. 방글라데시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 조약체결일 : 1983. 5. 10 ‖ 조약발효일 : 1984. 8. 22

(1) 공연료(performance fee)

● ● ●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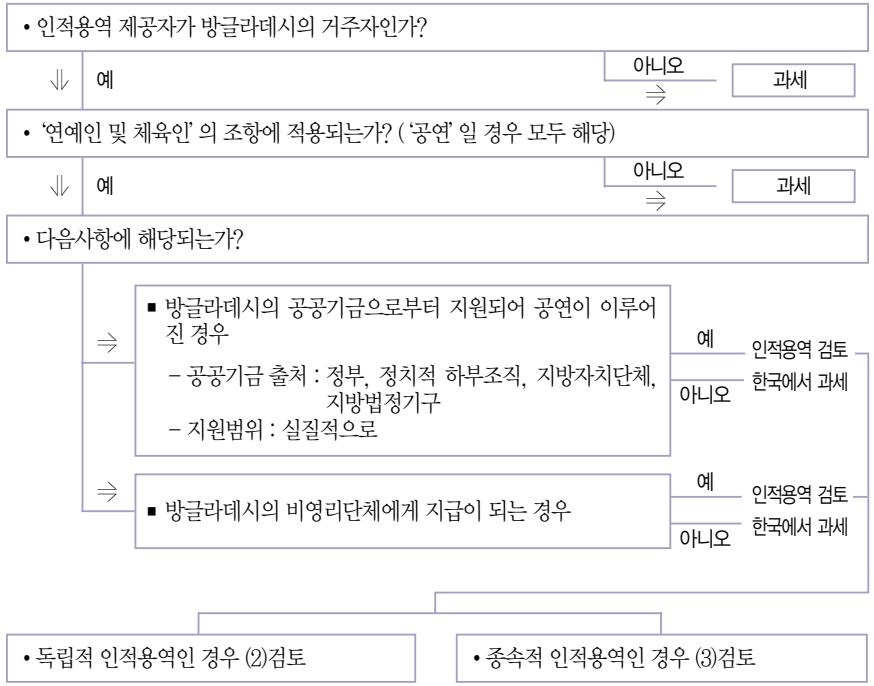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그와 같은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동인의 그와같은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타방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한 동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보수 또는 이익,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활동과 관련한 비영리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동 소득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동 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s,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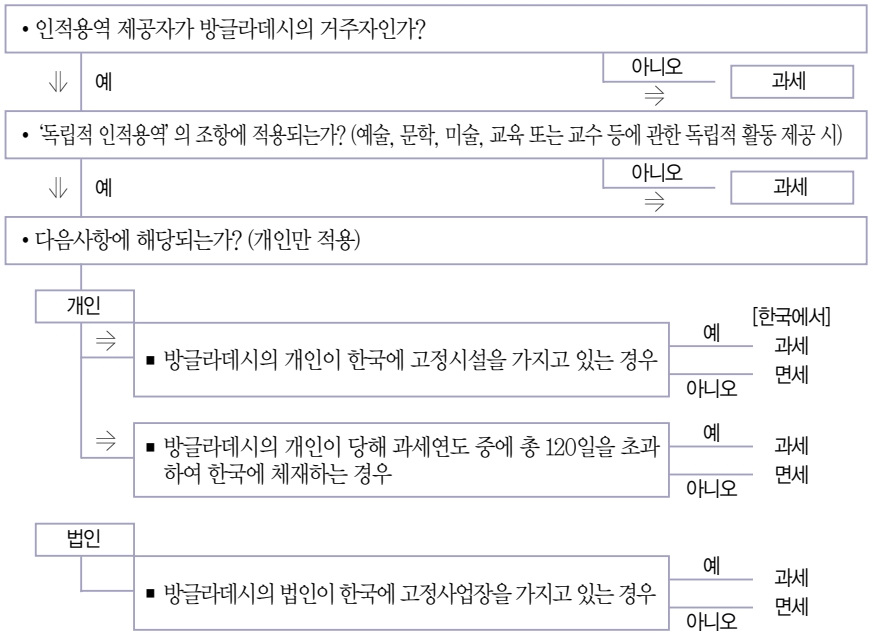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한 전문직업적인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동거인이 당해 과세연도 중 총 12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거나, 또는
   나. 동 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3.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 외에도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화,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performed in the other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f:
   (a) the individual is present in that other S. a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20 days in the taxable year concerned, or
   (b) the individual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방글라데시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방글라데시의 거주자가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 ▪ 방글라데시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방글라데시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그러한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동 고용주가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taxable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 있어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사용료의 수익전 소유자가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서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해당되는 각 경우에 따라 적용 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거주자일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의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2. 베네수엘라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 조약체결일 : 2006. 6. 26 ‖ 조약발효일 : 2007. 1. 15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베네수엘라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 는 체육인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 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S AND SPORTS PERS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er,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 perso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 perso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 perso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 perso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 perso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베네수엘라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 ▪ 베네수엘라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베네수엘라의 개인이 12개월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법인]

- ▪ 베네수엘라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동 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개인이 12월내에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체약국에서 수행된 용역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a) the individual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at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but only so much thereof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b) the individual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within any twelve(12) month period, but only so much thereof as is attributable to the services performed in that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0%(주민세 별도 / 11%)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총액의 5 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이나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

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23. 베트남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조약체결일 : 1994. 5. 20 ‖ 조약발효일 : 1994. 9. 9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베트남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베트남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베트남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사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5%(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특허권 · 의장이나 신안 · 도면 ·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

적 ·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5%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5%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 예술작품 또는 학술 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이나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경험 관련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24. 벨라루스 (THE REPUBLIC OF BELARUS)

‖ 조약체결일 : 2002. 5. 20 ‖ 조약발효일 : 2003. 6. 17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벨라루스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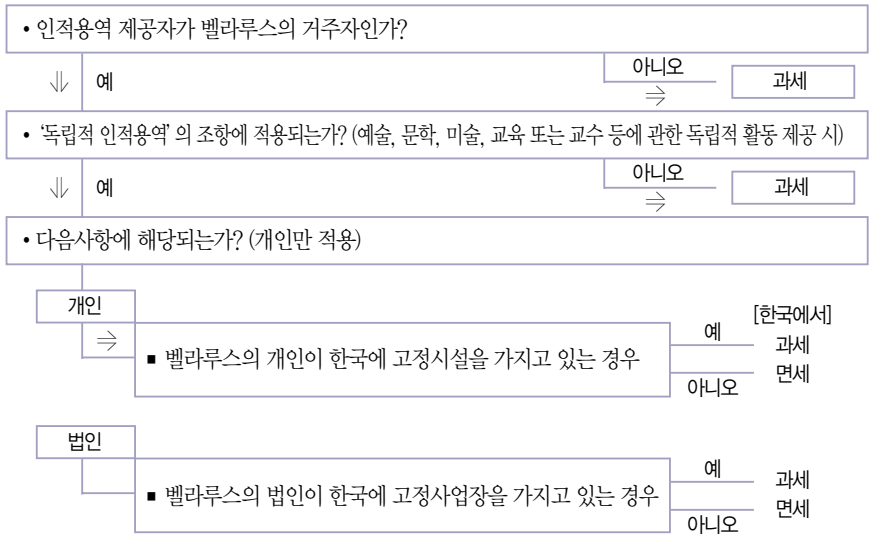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자기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그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활동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및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activities exercised from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5%(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 필름을 포함한 문학 · 예술 ·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장비나 운송 차량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그리고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그 밖의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25. 벨지움 (THE KINGDOM OF THE BELGIUM)

‖ 조약체결일 : 1994. 4. 20 ‖ 조약발효일 : 1996. 12. 3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벨지움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벨지움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정기구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 ⇒ ▪ 벨지움의 비영리단체에게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6 조 연예인 및 운동가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및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운동가에 의하여 그들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개인활동에 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및 운동가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금에서 보조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에 의해 조직된 법적단체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이 만약 어떤 단체가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격하다고 확인된다면, 동 단체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동 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달리 이용되지 않는 비영리단체를 위해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Article 16 Artist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such as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f television artists, and musicians, and by athletes from their personal activities as such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se activities are exercised.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thle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and athle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f the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public funds or sponsored by the ether Contracting State or by any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or if such activities are exercised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no part of the income of which was payable to, or wa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any proprietor, member, member of shareholder thereof, if the organization is certified as qualifying under this provis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2) 인적용역 사례비(독립적, 종속적 모두 포함)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벨기에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벨지움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벨지움의 거주자의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벨지움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인적 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은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을 경우

Article 14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7, 18, 19 and 20, income o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ersonal services (including professional servic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so rendered, such income or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o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calender year concerned; and
   (b) the income or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income or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person paying the remuneration has in the other State.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림 및 텔레비죤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982. 5. 21 개정)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중 초과부분은 사용료가 발생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6. 불가리아 (THE REPUBLIC OF BULGARIA)

‖ 조약체결일 : 1994. 3. 11 ‖ 조약발효일 : 1995. 6. 22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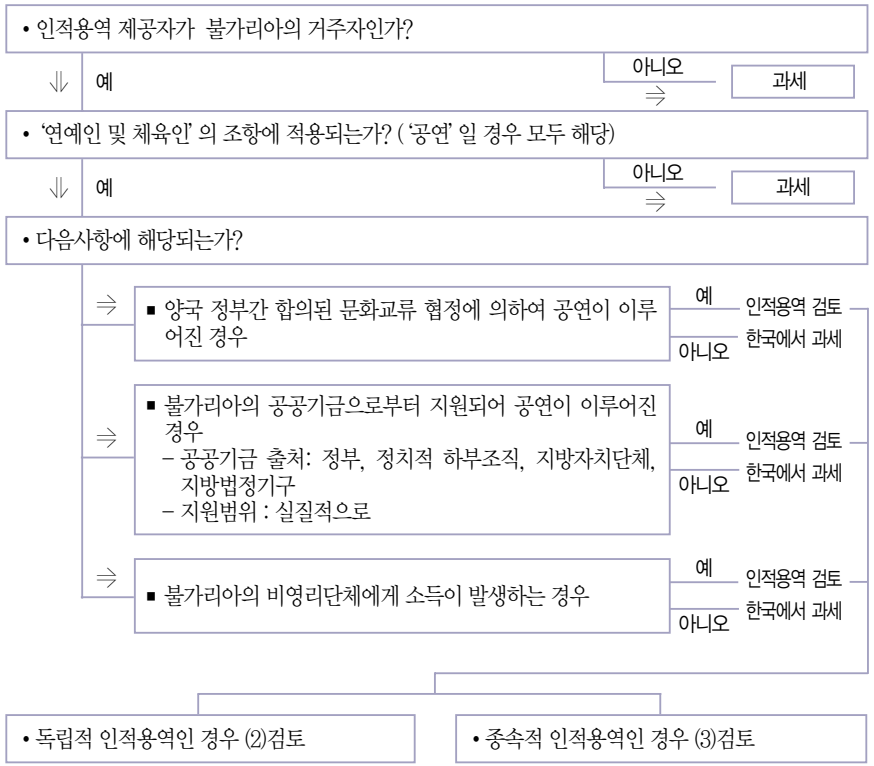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들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문화협정의 테두리안에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들에 의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 · 급료 · 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비영리조직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그것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비영리조직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and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the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within the framework of a cultural agreement or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불가리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불가리아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불가리아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불가리아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아니오 [한국에서] 과세 / 면세
  - ⇒ ▪ 불가리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아니오 과세 / 면세
  - ⇒ ▪ 불가리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아니오 과세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at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5%(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또는 신안) 도면 · 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그리고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당해 소득이 이 항에서 규정된 사용 또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경우 기술적 용역으로부터 수령되는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왔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지방당국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안에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27. 브라질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 조약체결일 : 1989 3. 7 ‖ 조약발효일 : 1991. 11. 2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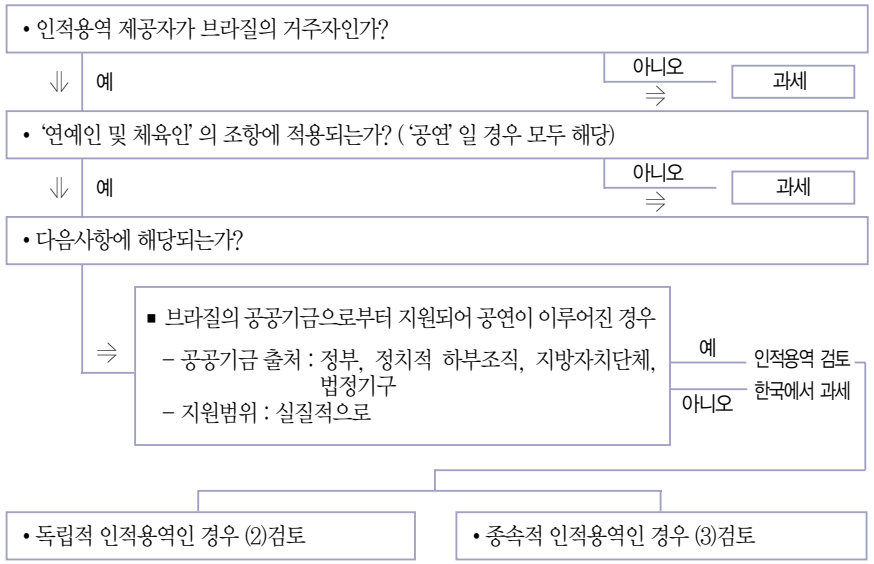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술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나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들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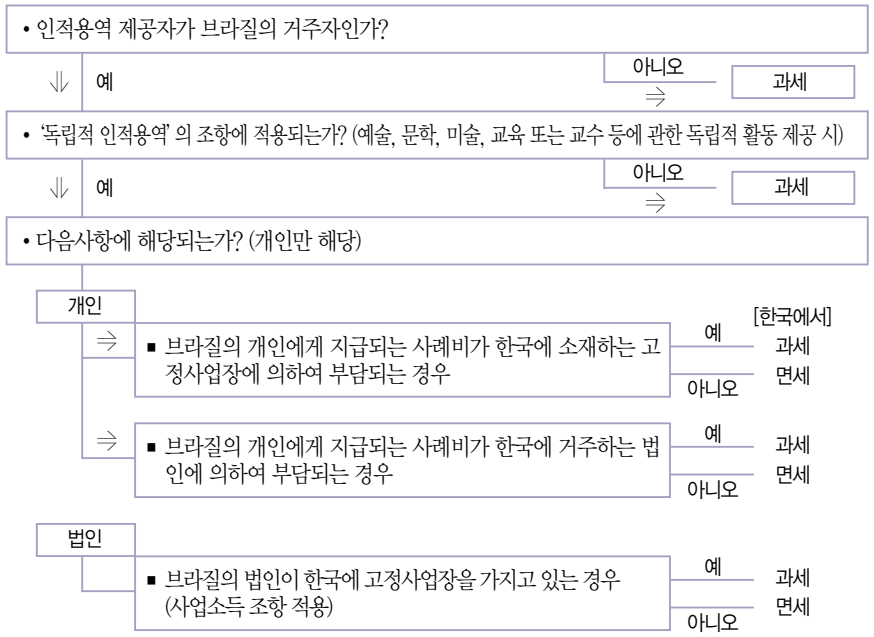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한 지급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는 법인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한 경우에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기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natur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payment of such services or activities is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 company resident therein. In such c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technical,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브라질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브라질의 거주자가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브라질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브라질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령인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그리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그리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f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저작권 10%, 상표권 25%(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5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동 사용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마지막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 제한세율 인하내역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90 (2007.8.8) 공문)

○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
- · 저작권 : 당초 15% → 10% 인하
- · 기 타 : 당초 15% → 10% 인하

※ 상표권 : 종전과 같음 (25%)

28. 사우디아라비아왕국 (THE KINGDOM OF SAUDI ARABIA)

‖ 조약체결일 : 2007. 3. 24 ‖ 조약발효일 : 2008. 12. 1

(1) 공연료(performance fee)

● ● ●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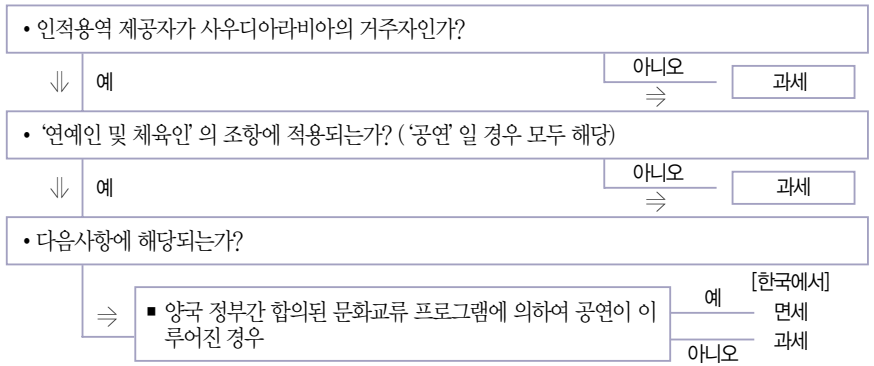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은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내에서 양 체약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동한 대가로 받는 소득은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 ■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당해 회계연도 어느 12개월 내에 체제시작일이나 종료일이 포함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법인]

- ■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적 용역 또는 여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만이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본인의 활동 목적상 다른 한쪽에 정기적으로 사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가능한 부분만큼만 동 다른 한쪽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내 체류기간이 당해 회계 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12개월 중 총합 183일 이상인 경우로서, 다른 한쪽 체약국내에서 동인이 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 부분만큼만 동 다른 한쪽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적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을 포함한 독립적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강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런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가. 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의 이용 또는 이용권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총액의 5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기타의 경우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 · 필름 · 테이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디스크를 포함하여) 문학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상업 또는 학술장비의 이용 또는 이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한쪽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한쪽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동 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와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런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런 사용료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29. 스리랑카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 조약체결일 : 1984. 5. 28 ‖ 조약발효일 : 1986. 6. 20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스리랑카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스리랑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 ⇒ ▪ 스리랑카의 비영리단체에게 지급되는 경우
    -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출연자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인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자격으로서 수행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 7조,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이나 운동가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에서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대한 그의 방문이 동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일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그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본조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인이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이거나, 또는 동인이 동 타방국의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 그 소득은 동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a Contracting Sta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is person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if this pers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스리랑카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

- 스리랑카의 개인이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법인]

- 스리랑카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독립적 자격의 전문 직업적 용역수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동 개인이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총 183일을 초과하여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전문 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in an independent capac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such services are perform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the individual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183 days within any 12 month period.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본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사용료의 지급인 일방 체약국 자신,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 체약국

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 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 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30. 스웨덴 (THE KINGDOM OF SWEDEN)

‖ 조약체결일 : 1981. 5. 27 ‖ 조약발효일 : 1982. 9. 9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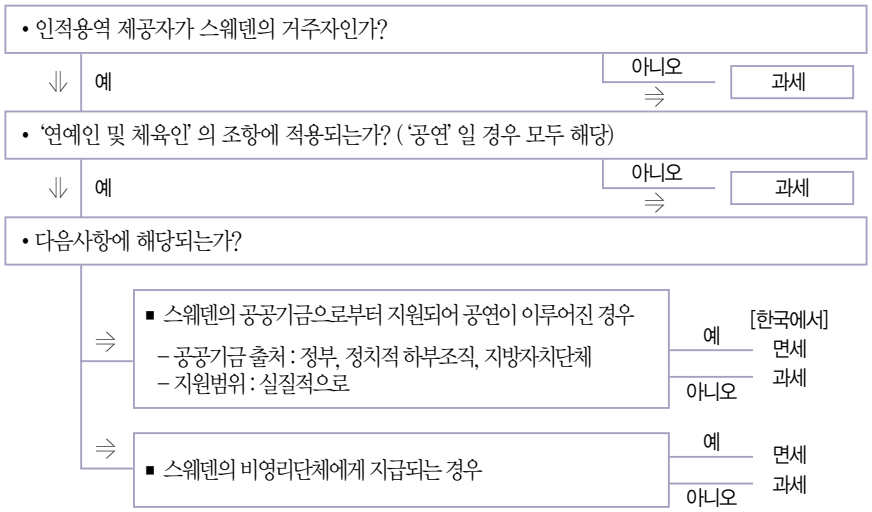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연극 · 영화 ·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이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에 의하여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과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에서 그들의 이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동 타방당사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 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과 운동가의 이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이거나 동인이 동 타방국의 비영리 단체인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is person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f local authorities, of if this pers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스웨덴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스웨덴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그 활동 수행의 목적상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에 가지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와 회계사 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s,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제한세율 : 저작권 15%, 상표권 10%(주민세 포함)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림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 · 상표 의장이나 모델 · 도면 ·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 그 정치적 하부조직 ·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일방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되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에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31. 스위스 (SWITZERLAND)

‖ 조약체결일 : 1980. 2. 12 ‖ 조약발효일 : 1981. 4. 22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스위스의 거주자인가?
  - 아니오 ⇒ 과세
  - ⇓ 예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아니오 ⇒ 과세
  - ⇓ 예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스위스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인적용역인 경우 (2)검토

관련 조항 전문

제 16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그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나 이윤, 임금, 급료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동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6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4,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2)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스위스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스위스의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 ▪ 스위스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스위스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인적 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다른 독립된 성격의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나 소득이 그 자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4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7, 18, 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as well as incom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services or activities are exercised or perform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services or activities are so exercised or performed, such remuneration or income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or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ervices or activities exercised or perform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or income is pai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or income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at person has in the other State.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

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 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32. 스페인 (KINGDOM OF SPAIN)

‖ 조약체결일 : 1994. 1. 17 ‖ 조약발효일 : 1994. 11. 2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스페인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제1항에 언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e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from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performed under a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are exercised.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스페인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스페인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 예술작품 또는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

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이나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당국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33. 슬로바크 (THE SLOVAK REPUBLIC)

‖ 조약체결일 : 2001. 8. 27 ‖ 조약발효일 : 2003. 7. 8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슬로바크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athlete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for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슬로바크의 거주자인가?
  - ⇓ 예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슬로바크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가 · 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저작권 면세, 상표권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3항 가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나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나. 문학작품 · 예술작품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하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34. 슬로베니아 (THE REPUBLIC OF SLOVENIA)

‖ 조약체결일 : 2005. 4. 25 ‖ 조약발효일 : 2006. 3. 2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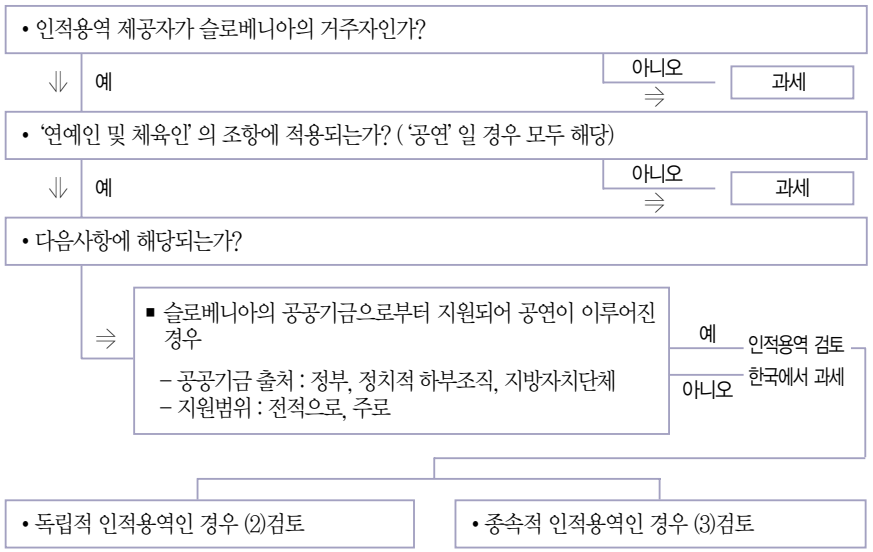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

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발생되는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및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으로의 방문이 타방체약국 정부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전적인 또는 대부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안에 따라 제7조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tainer or sportsman if the visit to that State is wholly or mainly supported by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In such a case, the income shall be taxa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 14 or 15, as the case may b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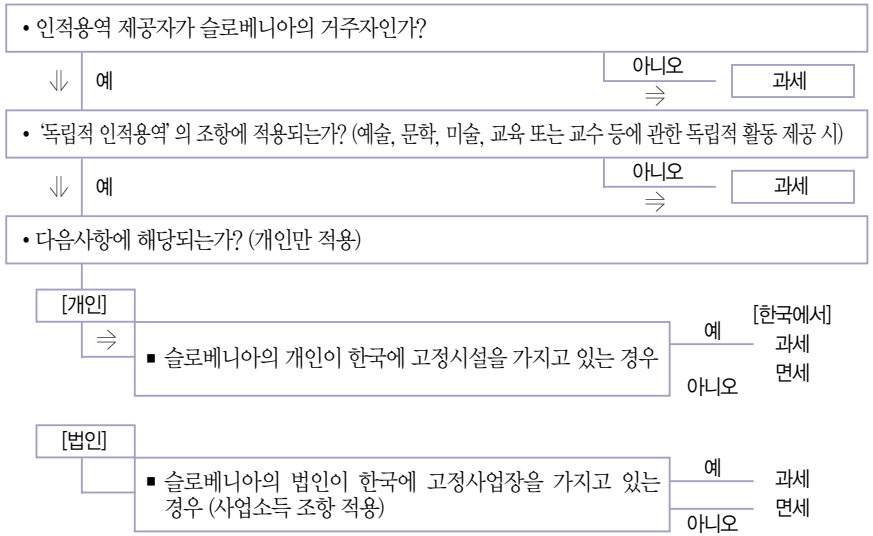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슬로베니아이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슬로베니아의 거주자가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한국에서]
    - 아니오 → 면세
  - ⇒ ▪ 슬로베니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슬로베니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 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5%(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일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35. 싱가폴 (THE REPUBLIC OF SINGAPORE)

‖ 조약체결일 : 1979. 11. 6 ‖ 조약발효일 : 1981. 2. 11

(1) 공연료(performance fee)

● ● ●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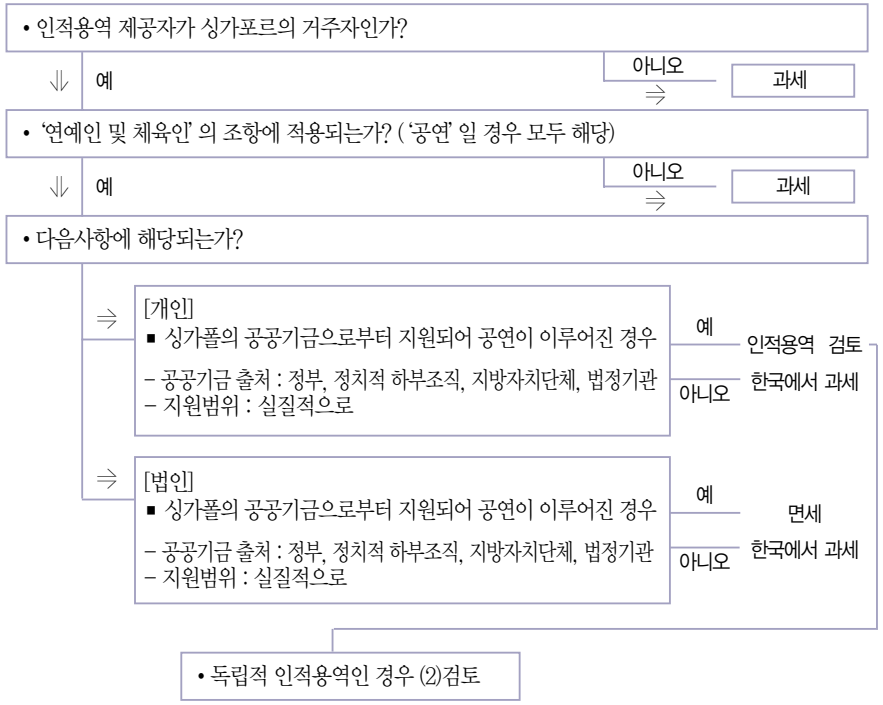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그들의 그러한 인적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이윤, 임금, 급료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동 타방체약국 정부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용역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경우, 그 기업이 제공한 이러한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그러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 정부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본조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각 체약국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을 포함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income derived by public entertainers, such as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s, and musicians, and by athletes, from their personal services as such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se services are performed.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services rendered in a Contracting State by public entertainers if the visit to that Contracting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public funds of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 where the services mentioned in paragraph 1 are provid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profits derived from providing these services by such an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unless the enterpris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such services.
4.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Government" shall include any political sub-division,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authorit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2)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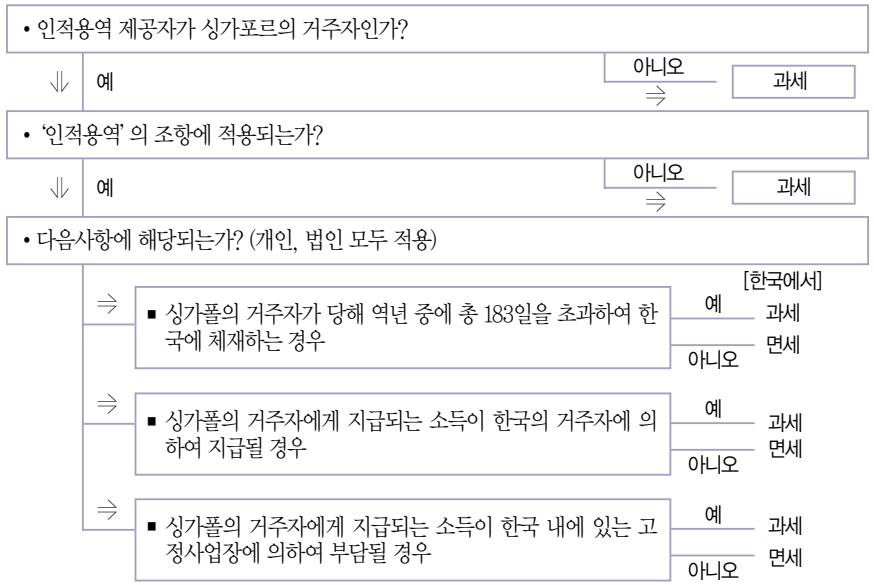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인적 용역

1.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국내에 체제하며,
나) 그 보수 또는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또는 그 인을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 또는 소득이 그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4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16,18,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or income for personal (including professional) services derived by a ra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services are perform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so performed, such remuneration or income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or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or personal (including professional) services perform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 and
   (b) the remuneration or income is pai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or income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at person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제한세율 : 15%(주민세 포함)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에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제2항의 규정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집필 · 제작
김소연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김혜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주소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최미경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감수
박혜진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도움주신 곳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인터뷰 및 자료 협조
김형태 ((주)예감 경영전략부장)
김혜영 (국립극장 공연기획단 공연사업팀/해외)
성무량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대외협력팀장)
손미정 (예술의전당 문화마케팅팀 과장)
조성원 (사단법인 문화마을 들소리 기획실)
황혜신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기획팀장)

2008년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국제교류 조세제도 해설집 (상)

발 행 일 2008년 12월 31일
발 행 인 이규석
발 행 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0 보생빌딩 2 · 4 · 5층
전화 (02)745-3045 팩스 (02)745-2071
www.gokams.or.kr
디 자 인 현대문화사 (02)2278-4482
인 쇄 현대문화사 (02)2278-4482

※본 책은 상 · 하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책자의 판매,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